

#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도이치자산운용(주)  
(영문명) Deutsche Asset Management (Korea) Co.,Ltd  
(홈페이지) <http://www.deam-korea.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19층  
(전 화) 02-724-7400

대 표 이 사 : 신용일, 김태형

담 당 책임자 : (직 책) 준법감시인  
(성 명) 정 진 권 (전 화) 02 - 724 -7460

작 성 자 : (직 책) 준법감시부 과장  
(성 명) 정 현 주 (전 화) 02 - 724 -7462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지케이부동산중개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 내림.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0.07.14
7. 확인일자	2010.08.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원고에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였음.